

수정소개설자 검사공무원(검사원) 확인서

1. 성 명:

2. 소 속:

3. 확인기간: 년 월 일 ~ 년 월 일(일간)

위 사람은 「축산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가
축인공수정소 검사공무원(검사원)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자치구청장

직인